

노	동	동	향
---	---	---	---

## 경제일반 동향

최효미\*

### ◆ 경제활동 부진 지속

- 2003년 6월의 경제활동은 자동차, 반도체 부문 등에서 생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재고도 증가
  - 산업생산은 섬유·의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내수 출하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고, 수출 출하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로 17.8% 증가하여 제품 출하 전체는 8.1% 증가함.
  -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76.8%로 전월에 비해서도 2.7%포인트 증가
- 2003년 2/4분기의 생산은 다소 증가
  -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 제품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내수 출하가 1.4% 감소한 반면, 수출 출하는 9.6% 증가
  - 재고는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9%로 전년동기에 비해 0.8%포인트 감소

<표 1>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1996=100,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4월	5월p	6월p	
생 산	109.3 (7.5)	106.1 (5.3)	115.7 (9.5)	109.9 (6.1)	112.0 (2.5)	113.5 (1.9)	110.8 (-1.8)	111.8 (7.8)	
제 조 업	109.5 (7.6)	106.0 (5.4)	115.2 (9.4)	108.5 (5.8)	112.0 (2.3)	113.3 (1.6)	110.7 (-2.2)	112.0 (8.0)	
서 비 스 업	154.1 (9.6)	153.1 (8.5)	157.2 (7.1)	149.0 (1.6)	154.3 (0.2)	152.0 (-0.5)	155.6 (-1.0)	155.3 (1.9)	
출 하	109.8 (7.1)	105.9 (4.9)	115.9 (9.5)	109.7 (4.7)	112.3 (2.3)	113.5 (1.2)	111.4 (-2.0)	111.9 (8.1)	
재 고	102.9 (-4.9)	102.6 (-2.7)	105.4 (0.3)	113.0 (11.0)	114.1 (10.9)	114.5 (11.6)	114.1 (12.4)	114.1 (10.9)	
평 균 가 동 률	76.7	76.7	77.2	77.4	75.9	76.7	74.1	76.8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1996=100, 평균가동률은 %, 그 외에는 2000=100.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6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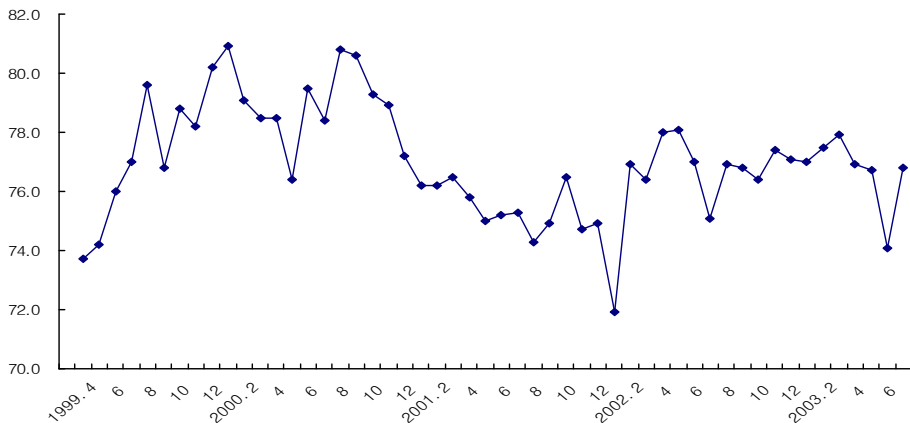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2년 6월 산업활동동향』, 2003. 7.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허가 면적, 종합주가지수 등이 상승하여 108.0을 기록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98.3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수출액 등이 증가하여 117.3

<표 2>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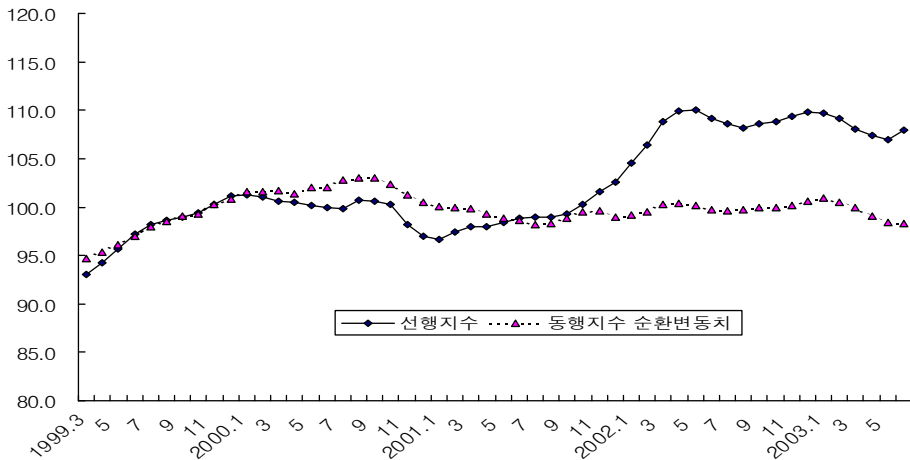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4월	5월p	6월p
선행종합지수	109.7	108.5	109.3	109.0	107.5	107.4	107.0	108.0
동행종합지수	107.8	108.8	110.7	112.4	111.6	111.7	111.4	111.8
후행종합지수	110.4	112.4	113.2	115.4	116.7	116.1	116.8	117.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9.8	100.3	100.5	98.6	99.1	98.4	98.3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3년 6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7.

[그림 2] 경기종합지수

(단위 :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세 주춤

○ 2003년 7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개인서비스, 집세,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상승했으나, 특소세율 인하로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물가가 하락하여 4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하락세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하여는 변동이 없음

○ 7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6%, 전월대비로는 0.2% 각각 상승

- 환율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공산품 물가 하락과 특소세 인하에 따른 운송장비의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율 인상 및 유가상승에 따라 석유 및 화학제품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는 전월과 동일

<표 3> 물가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106.9 (2.7)	107.4 (2.6)	107.9 (3.3)	109.8 (4.1)	110.5 (3.4)	110.5 (3.2)	110.2 (3.0)	110.1 (3.2)
생활 물가지수	108.0 (2.6)	108.2 (2.1)	108.5 (3.0)	111.1 (4.6)	111.7 (3.4)	111.7 (3.1)	111.2 (3.1)	111.2 (3.7)
생산자 물가지수	99.7 (-0.5)	99.2 (-0.2)	99.7 (1.6)	101.2 (3.0)	101.0 (1.3)	101.0 (1.0)	100.5 (1.1)	100.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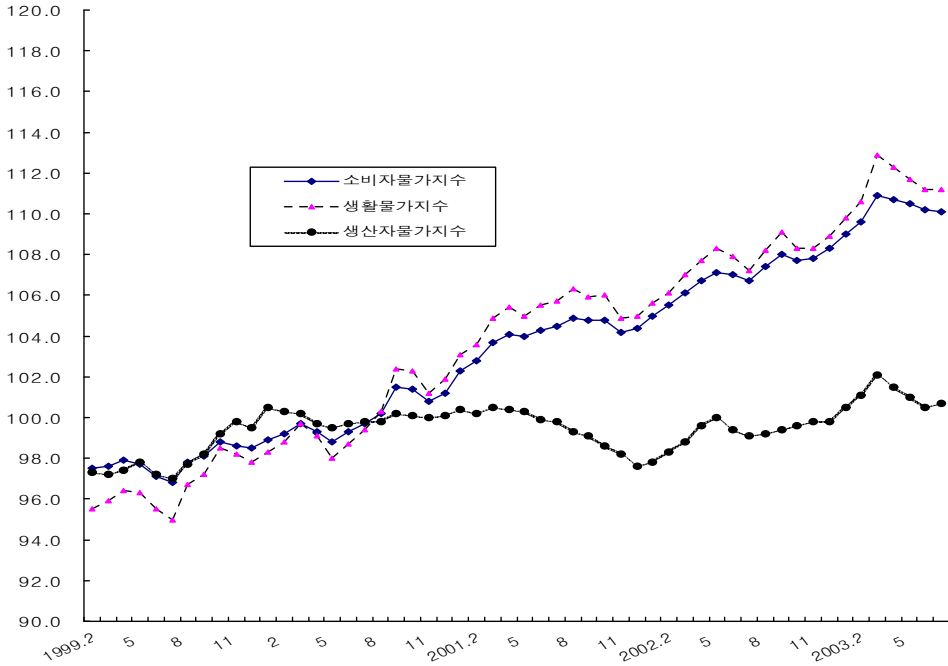
-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생산자물가지수 산출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됨(자세한 사항은 2003. 7. 통계청,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참조).  
 5)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7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8.

통계청, 『2003년 7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7.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03년 7월 중 수출은 155.4억달러, 수입은 148.8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지속(표 4 참조)
  - 2003년 7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55.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
  - 2003년 7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48.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3/4분기		
						5월	6월p	7월p
경 상 수 지	1,600.1	929.4	1,970.6	-1,721.3	2,570.5	1,181.3	1,756.0	-
수 출 액 <sup>1)</sup>	40,252 (4.9)	41,255 (15.9)	45,308 (24.6)	43,056 (20.8)	46,141 (14.6)	14,690 (3.6)	15,716 (21.9)	15,541 (16.0)
수 입 액 <sup>1)</sup>	37,192 (7.8)	38,884 (13.8)	42,262 (23.1)	44,216 (30.9)	41,670 (12.0)	13,510 (6.4)	13,392 (12.2)	14,876 (14.1)
평 균 환 율	1,269.5	1,196.6	1,220.6	1,201.0	1,208.9	1,199.8	1,194.0	1,181.6

주: 1) 통관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2003년 7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8.

한국은행, 『2003년 6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7.

\_\_\_\_\_, 경제통계 DB.

노	동	동	향
---	---	---	---

## 고용 동향

최효미\*

## ◆ 고용사정 악화 지속

- 2003년 7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122천명 증가한 781천명(실업률 3.4%)을 기록
  -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3%(-78천명) 감소한 22,456천명을 기록
  -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23,23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14,128천명
  -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 62.7%에 비해 0.5%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대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26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73천명 증가
  - － 7월 중 실업률의 증가 및 실업자수의 증가는 여름방학을 맞은 재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기인

## ◆ 실업자수 증가세 지속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전월대비 실업자수도 50~59세에서만 약간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증가
  - － 20~2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8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6천명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	23,112 (2.0)	23,067 (1.8)	22,989 (1.4)	22,439 (0.4)	23,055 (-0.2)	23,114 (-0.1)	23,138 (-0.1)	23,238 (0.2)
참가율	62.6	62.3	62.0	60.3	61.8	62.0	62.0	62.2
취업자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70 (-0.4)	22,383 (-0.6)	22,456 (-0.3)
실업자	689	652	663	806	751	744	755	781
실업률	3.0	2.8	2.9	3.6	3.3	3.2	3.3	3.4
비경제활동인구	13,807 (-0.5)	13,944 (-0.2)	14,107 (0.4)	14,755 (1.9)	14,243 (3.2)	14,187 (3.0)	14,192 (2.9)	14,128 (2.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3년 7월 고용동향』, 2003. 8.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전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44 (3.2)	755 (3.3)	781 (3.4)
15~19세	36 (10.6)	34 (9.6)	33 (11.2)	38 (11.6)	31 (11.2)	24 (9.0)	43 (14.9)	56 (14.7)
20~29세	291 (6.0)	271 (5.7)	291 (6.1)	387 (8.2)	331 (7.1)	334 (7.1)	323 (6.9)	329 (6.9)
30~39세	173 (2.7)	167 (2.6)	176 (2.8)	177 (2.8)	179 (2.8)	177 (2.8)	178 (2.8)	178 (2.8)
40~49세	110 (1.8)	107 (1.8)	99 (1.6)	118 (2.0)	126 (2.0)	125 (2.0)	127 (2.0)	132 (2.1)
50~59세	56 (1.8)	51 (1.6)	48 (1.5)	69 (2.2)	67 (2.0)	66 (2.0)	68 (2.1)	65 (2.0)
60세 이상	23 (1.0)	21 (0.9)	17 (0.8)	18 (0.9)	18 (0.8)	18 (0.8)	16 (0.7)	2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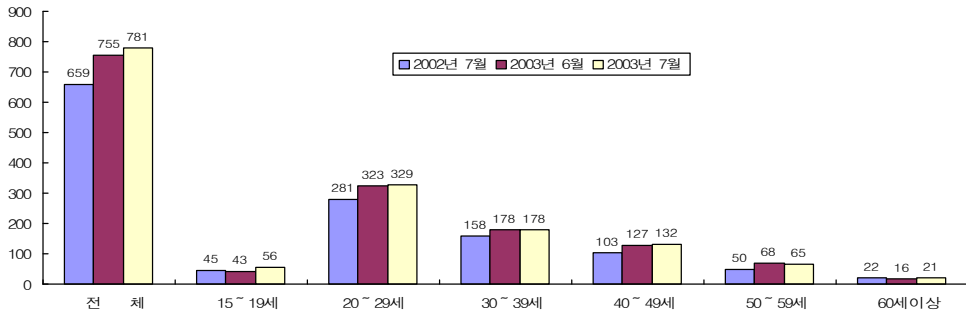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3년 7월 고용동향』, 2003. 8.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고용동향』, 2003. 8.

- 2003년 7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0.1%포인트, 0.9%포인트 상승
  - 고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85천명 증가, 전월대비로도 27천명 증가하는 등 고졸자의 실업 심화
  - 전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1%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오히려 17천명 감소

&lt;표 3&gt;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전 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44 (3.2)	755 (3.3)	781 (3.4)
중 졸 이 하	135 (2.0)	129 (1.9)	123 (1.9)	116 (2.0)	110 (1.8)	105 (1.7)	113 (1.8)	129 (2.1)
고 졸	343 (3.4)	328 (3.2)	325 (3.2)	426 (4.3)	385 (3.9)	377 (3.8)	399 (4.0)	426 (4.2)
대 졸 이 상	211 (3.4)	194 (3.1)	216 (3.4)	264 (3.9)	256 (3.7)	261 (3.7)	243 (3.5)	226 (3.2)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고용동향』, 2003. 8.

◆ 취업자수 감소세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78천명(-0.3%) 감소한 22,456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96천명)과 농림어업(-147천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4천명) 등에서는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171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17천명이 감소
  - 2003년 7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601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249천명(1.7%)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수는 342천명 감소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73천명(0.3%) 증가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23천명(2.0%),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44천명(0.8%)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50천명, -2.3%)이나 건설업(-21천명, -1.1%) 등은 감소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전 산 업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70 (-0.4)	22,383 (-0.6)	22,456 (-0.3)
농림어업	2,251 (-5.1)	2,252 (-5.3)	2,046 (-4.0)	1,699 (-1.6)	2,127 (-5.5)	2,154 (-5.6)	2,152 (-6.0)	2,102 (-6.5)
광업	18 (5.9)	16 (-15.8)	17 (-10.5)	17 (-15.0)	17 (-5.6)	16 (-15.8)	18 (5.9)	18 (12.5)
제조업	4,258 (-0.5)	4,214 (-0.3)	4,251 (-1.2)	4,168 (-1.7)	4,238 (-0.5)	4,252 (-0.4)	4,225 (-0.4)	4,220 (0.2)
건설업	1,791 (11.7)	1,781 (8.5)	1,812 (7.9)	1,734 (8.3)	1,854 (3.5)	1,852 (3.1)	1,864 (2.9)	1,843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04 (2.9)	6,017 (1.8)	5,977 (0.1)	5,919 (-1.2)	5,834 (-2.8)	5,845 (-2.3)	5,839 (-2.9)	5,883 (-3.2)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57 (6.7)	5,977 (7.1)	6,047 (6.9)	5,927 (2.6)	6,055 (1.6)	6,069 (1.8)	6,110 (1.9)	6,233 (4.1)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업	2,145 (0.0)	2,159 (0.9)	2,175 (0.6)	2,168 (0.8)	2,178 (1.5)	2,183 (1.7)	2,174 (1.3)	2,158 (-0.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3년 7월 고용동향』, 2003. 8.

### ◆ 신규실업자 비중 증가

- 2003년 1/4분기 신규실업자의 비중은 13.2%, 2/4분기에는 8.0%로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
  - 7월 중 신규실업자의 비중도 7.6%로, 3~5월까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증가세를 보임.
- 2003년 7월의 전직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3천명(16.6%) 증가한 722천명, 신규실업자는 19천명(47.5%) 증가한 59천명
  - 전월대비로는 신규실업자는 4천명(7.3%) 증가, 전직실업자도 22천명(3.1%) 증가
- 다만 2003년 7월 중 전직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 3개월 미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다소 짧아지는 경향
  -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듦.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신규 실업자	43 [6.2] (-18.9)	30 [4.6] (-31.8)	37 [5.6] (-21.3)	106 [13.2] (60.6)	60 [8.0] (39.5)	53 [7.1] (23.3)	55 [7.3] (48.6)	59 [7.6] (47.5)
전직 실업자	646 [93.8] (-15.2)	622 [95.4] (-12.4)	626 [94.4] (-11.1)	700 [86.8] (-8.3)	692 [92.1] (7.1)	691 [92.9] (6.8)	700 [92.7] (15.7)	722 [92.4] (16.6)
3개월 미만	385 [59.6] (-13.3)	360 [57.9] (-17.1)	334 [53.4] (-21.8)	459 [65.6] (-2.3)	443 [64.0] (15.1)	435 [63.0] (15.7)	432 [61.7] (28.2)	463 [64.1] (28.6)
3~5개월	178 [27.6] (-15.2)	175 [28.1] (-4.9)	191 [30.5] (3.2)	189 [27.0] (-4.5)	186 [26.9] (4.5)	197 [28.5] (7.1)	199 [28.4] (4.2)	194 [26.9] (7.8)
6~11개월	66 [10.2] (-23.3)	67 [10.8] (-13.0)	84 [13.4] (7.7)	51 [7.3] (-37.8)	60 [8.7] (-9.1)	56 [8.1] (-21.1)	67 [9.6] (9.8)	64 [8.9] (6.7)
12개월 이상	16 [2.5] (-23.8)	20 [3.2] (33.3)	17 [2.7] (30.8)	2 [0.3] (-83.3)	2 [0.3] (-87.5)	3 [0.4] (-81.3)	2 [0.3] (-88.2)	2 [0.3] (-89.5)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휴가철 근로시간 감소

- 2003년 7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3.0%) 감소하였으며, 전월에 비해서도 3.4시간 줄어듦.
  - 이는 여름휴가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와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증가에 기인함.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에 비하여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전월대비로는 상용직에서 가장 많이 줄어듦.

<표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5월	6월	7월
전 체	49.8	47.3	49.7	48.7	49.3	49.4	49.2	45.8
상 용 직	51.0	47.4	50.8	49.5	50.6	50.6	50.6	46.1
임 시 직	51.5	49.5	51.1	50.6	50.4	50.6	50.1	48.0
알 용 직	43.3	42.4	44.0	42.0	42.5	42.8	42.5	3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	동	동	향
---	---	---	---

## 임금 동향

강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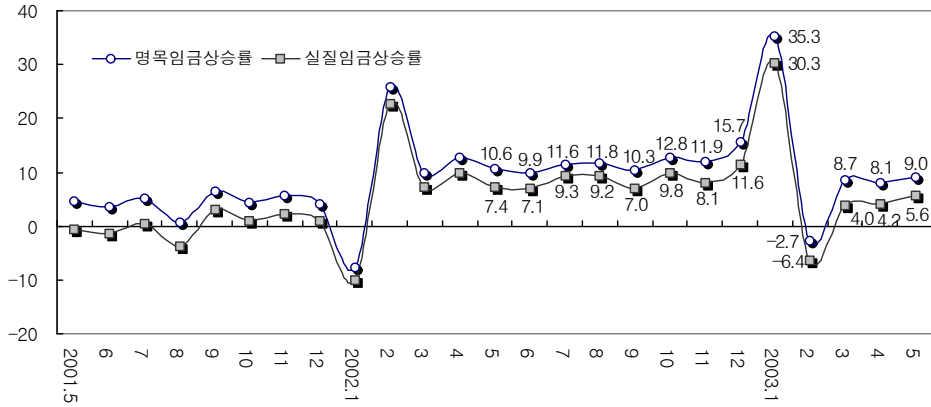
### ◆ 임금상승률 다소 둔화

- 2003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866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0%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10.6%보다 1.6%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935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와 동일한 9.0%의 상승률 기록
  - 1~5월 임금총액은 2,03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상승
  - 2003년 5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급여 상승률의 둔화세 지속,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전년동월보다 높은 상승률,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축소 등으로 요약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1.8%포인트 하락
  - 2003년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5.6%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 상승률 7.4%보다 1.8%포인트 낮은 것
  - 올 들어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3.4%포인트 낮게 나타남.
  - 1~5월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2003. 4	2003. 5
임 금 총 액	1,862 ( 8.4)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2 ( 8.1)	1,866 ( 9.0)
정액급여	1,371 (11.9)	1,396 (12.0)	1,415 (11.6)	1,453 (12.7)	1,494 ( 9.0)	1,503 ( 8.6)	1,519 ( 8.5)
초과급여	117 (-8.2)	127 (-2.8)	127 (-3.3)	133 (-1.4)	128 ( 9.3)	131 ( 4.1)	138 ( 8.0)
특별급여	374 ( 2.3)	338 (12.9)	452 (14.7)	490 (22.2)	481 (28.5)	379 ( 7.5)	209 (13.5)
실 질 임 금	1,765 ( 5.7)	1,740 ( 8.1)	1,856 ( 8.4)	1,924 (10.2)	1,915 ( 8.5)	1,818 ( 4.2)	1,689 ( 5.6)
소비자 물가	105.5 ( 2.5)	106.9 ( 2.7)	107.4 ( 2.6)	107.9 ( 3.3)	109.8 ( 4.1)	110.7 ( 3.7)	110.5 ( 3.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1월 이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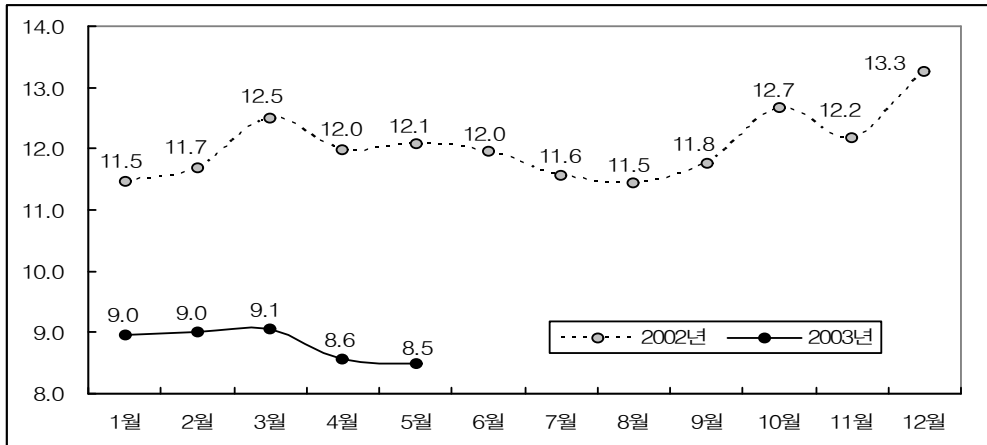
○ 정액급여 상승률은 둔화한 반면, 초과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오름세

- 2003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19천원으로 전년동월(1,400천원)에 비해 8.5%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1%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정액임금 상승률은 올 들어 한 자리수를 유지
-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8.0%로 전년의 -0.4%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

-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13.5%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보험업(40.0%), 교육서비스업(20.4%), 오락 및 기타 서비스업(14.4%) 등의 높은 상승에 기인
- 1~5월 상승률 평균은 정액급여 8.8%, 초과급여 7.9%, 특별급여 22.4% 기록

[그림 2]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5월 임금총액 상승률 9.0%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7.2%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6.7%,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16.2%를 기록

◆ 시간당 임금은 15.4%의 높은 상승

○ 2003년 5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9,012원, 7,744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15.4%, 12.3%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5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5.8%로 큰 폭 감소한데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 상승률(9.0%)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 1~5월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869원, 8,69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11.2% 상승

1)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Delta TWG}{TWG} = \frac{\Delta RWG}{RWG} \frac{RWG}{TWG} + \frac{\Delta OWG}{OWG} \frac{OWG}{TWG} + \frac{\Delta SWG}{SWG} \frac{SWG}{TWG}$$

<표 2>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 원,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2003. 4	2003. 5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862( 8.4)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2( 8.1)	1,866( 9.0)
	시간당임금(원)	9,204(12.3)	8,994(14.8)	9,648(15.3)	9,681(13.1)	10,272(11.6)	9,512( 8.5)	9,012(15.4)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744( 7.3)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82( 8.0)	1,713( 6.9)
	시간당임금(원)	8,198(11.5)	7,979(14.4)	8,784(15.0)	8,896(15.2)	9,134(11.4)	8,328( 8.4)	7,744(12.3)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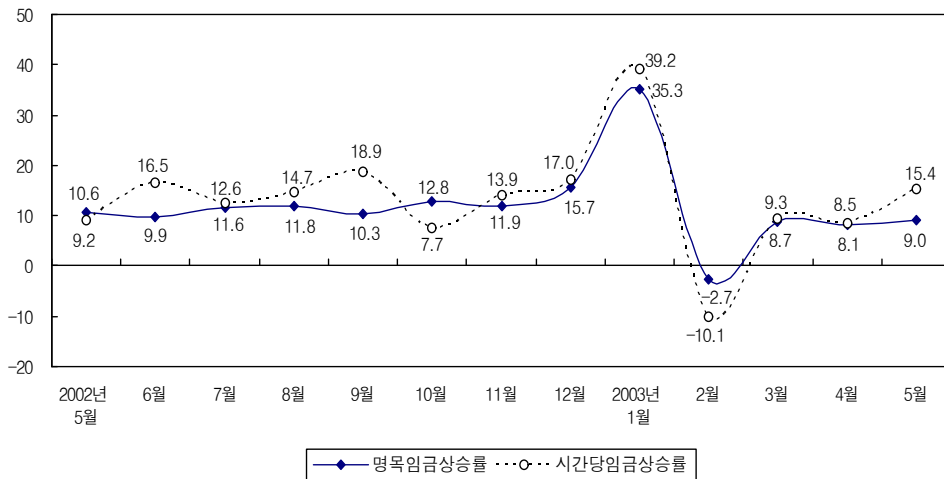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3]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산업별 임금상승률 편차 두드러져

- 금융 및 보험업 임금이 높은 상승에 반하여 제조업은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5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6.9%, 6.1%, 4.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
  -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20.1%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상승률을 나타냄.



<표 3>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2003. 4	2003. 5
전 산업	1,862( 8.4)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2( 8.1)	1,866( 9.0)
제조업	1,744( 7.3)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82( 8.0)	1,713( 6.9)
건설업	1,794( 9.9)	1,772( 8.6)	1,932( 9.0)	1,937(12.9)	2,058(14.7)	1,925( 7.6)	1,826( 9.0)
도매 및 소매업	1,826(11.1)	1,819(10.6)	1,925( 9.9)	1,983( 6.4)	2,064(13.0)	2,012(11.8)	1,816( 9.0)
숙박 및 음식점업	1,299(14.2)	1,337(16.4)	1,385(14.3)	1,436(19.7)	1,409( 8.5)	1,440( 5.4)	1,312( 6.1)
운수창고통신업	1,764( 4.7)	1,930( 8.3)	1,959( 9.2)	2,051(10.8)	2,040(15.6)	2,245(11.8)	1,816( 9.8)
금융 및 보험업	3,026(12.3)	2,720(16.4)	2,936(10.8)	3,080(14.5)	3,520(16.3)	2,932( 5.3)	2,959(20.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699(10.9)	1,727(15.5)	1,764(12.5)	1,823(13.5)	1,817( 6.9)	1,784( 3.4)	1,728( 4.7)
사회개인서비스업	1,958(10.0)	1,969(11.2)	2,123(13.8)	2,119(14.4)	2,165(10.6)	2,097( 8.1)	2,062(10.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축소

-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아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10~29인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9.6%로 가장 높고, 300~499인 규모는 4.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03년 5월 규모별 임금동향의 특징은 최근의 추세와 다르게 10~29인 및 30~99인 등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며, 이는 향후 규모간 임금격차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축소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전규모 및 10~29인, 30~99인 규모에서 소폭 축소되었으며 5~9인, 100~299인, 300~499인 규모는 소폭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99인 사업체에서 0.9포인트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표 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500인 이상=100)

(단위: 천원, %)

	2002								2003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분기			
	지수	( )	지수	( )	지수	( )	지수	( )	지수	( )	4월	지수	5월	지수
전 규모	1,862	73.3	1,860	73.4	1,994	72.8	2,076	67.7	2,102	67.3	2,012	71.8	1,866	78.9
	( 8.4)		(11.0)		(11.2)		(13.8)		(12.9)		( 8.1)		( 9.0)	
5 ~ 9인	1,437	56.6	1,421	56.1	1,519	55.4	1,503	49.0	1,509	48.3	1,450	51.8	1,441	60.9
	( 8.8)		( 9.8)		( 9.2)		( 9.7)		( 5.0)		( 4.9)		( 5.6)	
10 ~29인	1,679	66.1	1,654	65.3	1,745	63.7	1,767	57.7	1,787	57.2	1,695	60.5	1,687	71.3
	( 4.9)		( 9.5)		( 4.7)		( 7.2)		( 6.5)		( 5.6)		( 9.6)	
30 ~99인	1,794	70.7	1,789	70.6	1,919	70.1	1,925	62.8	1,965	62.9	1,880	67.1	1,827	77.2
	(10.6)		(11.5)		(10.5)		( 9.6)		( 9.5)		( 4.9)		( 9.5)	
100~299인	1,908	75.2	1,958	77.3	2,119	77.4	2,233	72.8	2,150	68.9	2,204	78.7	1,966	83.1
	(11.5)		(12.5)		(17.7)		(18.0)		(12.7)		( 8.5)		( 7.2)	
300~499인	2,194	86.5	2,233	88.1	2,384	87.0	2,577	84.1	2,394	76.7	2,448	87.4	2,111	89.2
	( 6.1)		( 8.0)		(10.2)		(14.9)		( 9.1)		( 5.3)		( 4.5)	
500인 이상	2,538	100.0	2,534	100.0	2,739	100.0	3,065	100.0	3,123	100.0	2,802	100.0	2,366	100.0
	(10.3)		(14.9)		(17.9)		(26.5)		(23.0)		( 9.8)		( 8.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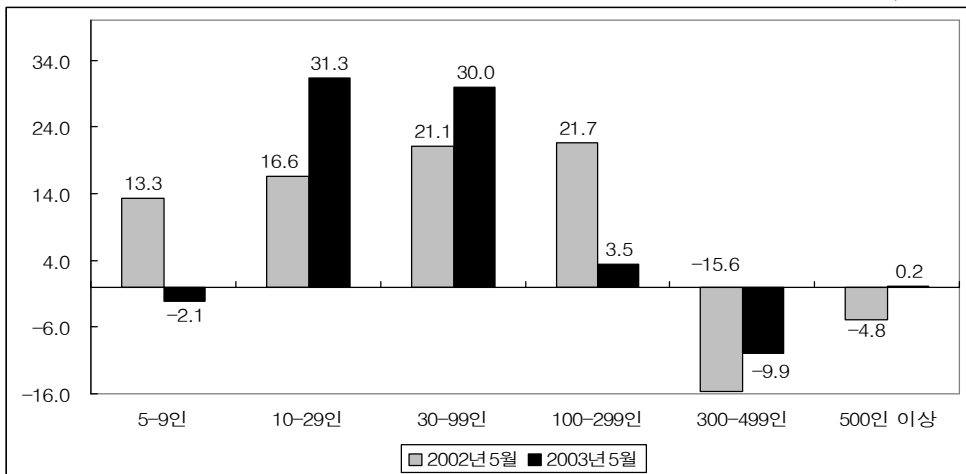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를 주도

- 2003년 5월의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을 보면, 임금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10~29인과 30~99인 규모의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동월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100인 이상 규모는 전년동월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나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4]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성별 임금격차 소폭 확대 경향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
  - 2003년 5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9.3%를 기록하여 여성의 8.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3.9로 전년동월(64.4)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5>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남성=100)

(단위: 천원,%)

	2002								2003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분기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지수	4월	지수	5월	지수	
전 체	1,862 ( 8.4)	-	1,860 (11.0)	-	1,994 (11.2)	-	2,076 (13.8)	-	2,102 (12.9)	-	2,012 ( 8.1)	-	1,866 ( 9.0)	-
남 성	2,088 ( 7.6)	100.0	2,090 (10.6)	100.0	2,242 (11.3)	100.0	2,352 (14.2)	100.0	2,376 (13.8)	100.0	2,278 ( 8.6)	100.0	2,100 ( 9.3)	100.0
여 성	1,344 ( 9.5)	64.4	1,340 (11.7)	64.1	1,435 (10.2)	64.0	1,455 (11.9)	61.9	1,487 (10.6)	62.6	1,418 ( 6.5)	62.3	1,342 ( 8.5)	63.9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3년 7월 협약임금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하락

- 2003년 7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9%보다 0.2%포인트 하락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중은 86.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90.0%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비중은 13.0%로 전년 같은 기간의 9.8%보다 증가하였으며, 하향조정업체의 비중은 0.2%로 동일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7%로 전년동기의 7.1%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 부문은 6.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3%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2003년 7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2,49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43.3%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53.5%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44.0%로 5,575개소 중 2,45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40개소가 타결되어 22.7%의 진도율을 기록

<표 6>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7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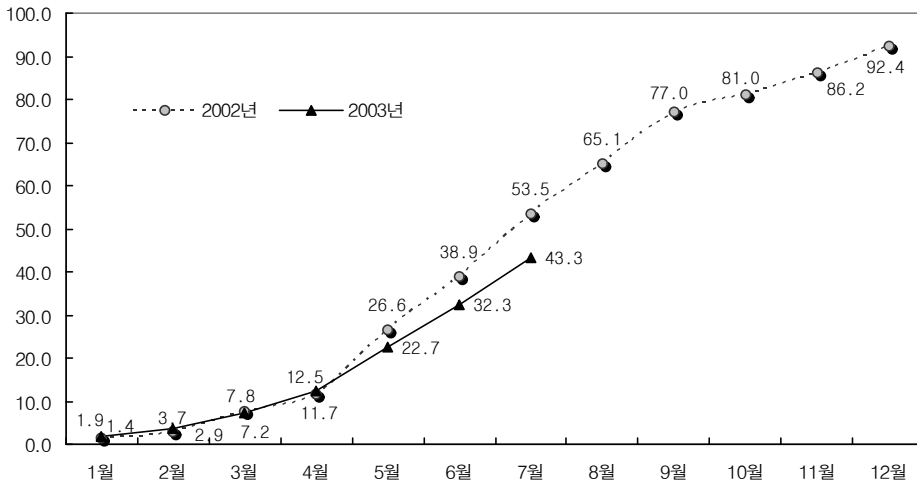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상승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5,401)	2,491(2,887)	43.3(53.5)	6.7(6.9)
민간부문	5,575(5,236)	2,451(2,833)	44.0(54.1)	6.7(7.1)
공공부문	176( 165)	40( 54)	22.7(32.7)	6.1(4.3)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5]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추이(2002, 2003년)



노 동 동 향

# 노사관계 동향

윤 문 희\*

## I. 노사분규 동향

### ◆ 근로손실일수 감소, 발생건수분규참가자수 증가

- 2003년 8월 18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는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표 1 참조)
  -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68건으로 전년동기 243건에 비해 증가
  - － 2003. 7. 18~8. 18 사이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1건으로 6. 15~7. 15의 노사분규 발생건수 141건에 비해 증가세 둔화(그림 1 참조)
  - － 분규참가자수는 125.4천명으로 전년동기 81.3천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979.9천일로 전년동기의 1183.5천일에 비해 감소
  -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부분파업의 영향으로 분규참가자수가 증가한 반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

---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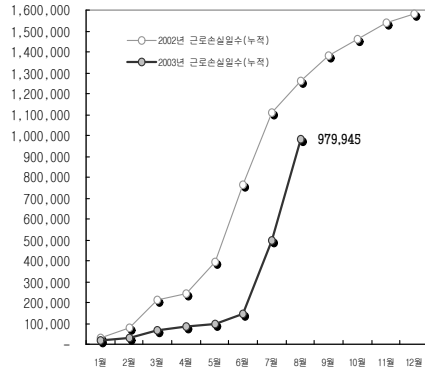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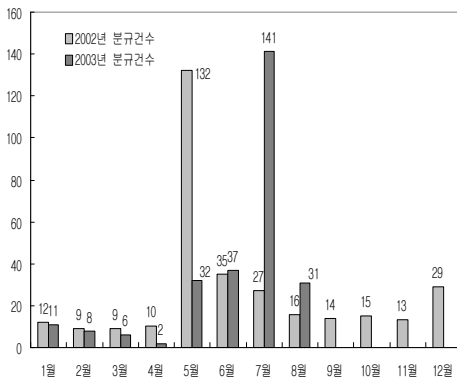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2001. 8. 18	2002. 8. 18	2003. 8. 18
노사분규 발생 건수	165	243	268<10>
분규 참가자 수(명)	61,434	81,267<732>	125,356<714>
근로손실일수(천일)	602.3	1,183.5	979.9

주: < >안은 전년 이월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해결 부분임.  
 자료: 노동부.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 II. 노동정책 동향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국회 통과

- 2003. 7. 31.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통과
  -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 해결요구,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호의 요구 등의 증폭으로 입법이 이루어짐.
  - 이 법률의 통과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법 공포 1년 뒤(2004. 8)부터 시행

됨. 고용허가제 도입시에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함.

-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한 우려와 불법적 외국인근로자 사용의 근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한편 한국노총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실시에 대하여 혼란과 우려를 표하고 산업연수생 폐지·고용허가제 전면실시를 촉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합법적으로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효과를 낼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지양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의 부여효과가 발생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sup>1)</sup>
-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 결정(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정부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담당(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 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에서 한국어 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정당한 대우
  -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간 취업기간(3년) 설정
  - 2003. 3.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인정

1)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불법체류자 대책」, 『매월노동동향』, 2003. 9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국회 통과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20여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의 추진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되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향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계기가 마련됨.
  -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
  - 정부는 이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 처리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 등의 공표
  - 9. 1.부터 10. 31. 2개월간 신청기간으로 설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 취업 활동 보장

◆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8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
-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변경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의 생리휴가 무급화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
  - 사용자의 휴가축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시행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정부안과 노동계 단일안 비교



내용(근로기준법)	현행	정부안(개정안)	노총 단일안(8. 6)
연월차휴가수당 폐지 (제59조의2 신설)	신설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보상의무 면제	도입반대
연장근로 확대 및 할증률 인하(부칙)	신설	3년간 12시간→16시간으로 최초 4시간 할증률 25%	도입반대
생리휴가(제71조)	월 1회 유급	무급휴가	현행유지
시행시기(부칙)	없음	2011년까지 단계적 실시	2005. 7. 1.까지 전면실시
연월차유급휴가 (제57조, 제59조 제1, 2항)	월 1일 유급월차휴가, 연차휴가 10~32일, 매년 1일 가산	연월차휴가 통합 15~25일, 매 2년 1일 가산. 1년 미만자 1월 개근시 1일 휴가	연월차휴가 통합 18~27일, 매 1년 1일 가산. 1년 미만자 1월당 1.5일 유급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0조 제2항)	1개월 단위. 1주 56시간 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52시간·1일 12시간 한도	3개월 단위 1주 48시간·1일 10시간 한도
임금보전(부칙)	신설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기준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
기존 단협변경(부칙)	신설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명시	반대
연소자, 유해위험사업장 근로시간 (제67조, 제46조)	연소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 한도/유해위험사업장 1일 6시간, 1주 34시간 한도	연소자 1주 7시간, 1주 40시간 한도/유해위험사업장 현행	연소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유해사업장 1일 6시간, 1주 30시간 한도

###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양대노총 총과업

- 양대노총은 8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과업 실시
  -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안은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폐지, 연월차휴가를 통합·축소, 생리휴가의 무급화, 주5일제의 2010년까지의 단계적 시행과 임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이러한 정부안에 대하여 경영계는 8. 14. 이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결단 촉구
  - 양대노총은 이러한 정부안에 따른 주5일제 도입이 여성의 휴가일수 감소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노동계 내의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
- 양대노총은 8. 6.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단일안을 발표
- 근로시간 단축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한 여성 및 비정규직 등의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 정계와 경영계에 양대노총의 동일한 입장 표명
  - 노동계의 단일안은 1년 이상 근속노동자의 연월차휴가를 18~27일로 통합조정하고,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1년 미만 근속노동자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로 확대
  - 노동시간 및 연월차휴일수 변동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
  - 또한 정부안은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주5일제를 최장 7년까지 늦추어 노동계 내 차별이 확대되므로 2005. 7. 1.까지 전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주5일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 정부안의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은 모성보호를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영계는 노동계의 단일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
- 노동계의 단일안이 임금보전의 범위가 너무 넓어 휴가제도의 보정이 아닌 편법적 임금인상의 방편에 불과하고, 지나친 휴가일수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짐.
  -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행기한은 2년으로 너무 촉박하며, 유급주휴제도의 존치, 연장근로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 국제기준과 관행을 철저히 외면
  - 유급주휴제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하고, 연장근로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나 일본의 경우에 따라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함.
- 노동계의 단일안 발표 후 8. 8.부터 노사정 재협상을 시작하여 8. 12.~14.까지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협상을 이루지 못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마지막 협상에서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는 2004. 7.~2008. 7. 2년 앞당기고(전사업장 포함) △휴

일수조정과 관련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월 1.5일(정부안 월1일) △1년 이상 근속자는 16~25일(정부안 15~25일) △할증률 현행 50% 유지(정부안 25%)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

- 경영계는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 환노위의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정안 수용불가 방침 밝힘.
  - 국회 환노위는 19일 법안소심사소위원회로 주5일제를 넘겼으나 소위가 열리지 못하였음. 이후 20일 소위원회를 거쳐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 시기만을 1년씩 늦춘 정부안대로 통과
- 양대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저지를 위하여 19일부터 양일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노숙농성
- 8. 19.~8. 20. 양대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결하여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중단을 촉구
  - 노동부는 이번 양대노총 총파업 참가사업장을 40여개 26,870명으로 집계함.
- 8. 21. 국회 환노위 통과, 8. 29. 본회의 통과
- 경영계는 환노위 통과와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
  - 민주노총은 영세업체의 비정규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급변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20인 미만 업체 760만 노동자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늦춘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
  -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영세업체·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집중피해와 노사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비정규직 휴일 월 1.5일 보장, 임금보전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
  -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 결의
  - 한국노총도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하여 정부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 아래 연월차를 축소시키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며 탄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근기법 개악안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노동자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소외시키는 ‘차별법’으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힘.
  - 한국노총은 본회의 통과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
  - 양대 노총 8. 28. 국회앞 대규모 집회
  - 8. 21.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 29. 그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

### ◆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

- 지난 부분파업 48일만에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약 협상타결
  - 현대자동차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7. 30.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이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노조는 노사자율을 해친다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경제를 해하고 있는 상황타개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
  - 이후 현대노사는 언론과 협력사 등의 비난에 하계휴가 이후 적극적으로 8. 4.부터 본교섭을 재개한 후 8. 6. 임단협 타결
  - 현대자동차 노사는 주5일근무제 9. 1.부터 실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보장, 임금 9만 8천원 인상, 성과급 200%, 생산성 향상격려금 100%+100만원 지급, 근로자의 경영참가 보장 등의 주요 내용에 합의
  -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는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영참가 보장이 주주경영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경영계는 또한 현대자동차의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하였고, 윤진식 산업부장관도 경영권을 제약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개별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것을 경제단체가 문제삼는 것은 노사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고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경제단체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비판

### ◆ 화물연대 재파업

- 7. 21.부터 7. 31.까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2.9% 투표, 90.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
  - 5. 15. 노정합의 이후 합의사항 이행과 실질운임보장을 위한 정부-화주-운송업체 간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실질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7. 17. 임시대의원회를 거쳐 7. 21~7. 31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 화물연대는 8. 19까지 정부-화주-운송업체의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결렬로 파업돌입

- 화물연대는 8. 15. 부산 확대간부수련회에서 5. 15. 합의 중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추진중인 임의가입-자기부담 방식을 저지하고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측의 지입차주의 차량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시행에 따라 개별등록제 조기실시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
- 화물연대는 운송료 등의 협상과 관련하여 컨네이너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야 교섭을 일괄타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하여 운수업체들은 교섭방법의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별 분리교섭을 주장
- 또한 노조는 화물차 공급이 과잉상태인 만큼 조합원인 지입차주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간별 최저·최고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용자측은 수용불가 입장으로 8. 19. 교섭이 결렬되었으나 BCT노조는 8. 20. 오후 막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파업을 한시적 유보
- 8. 20. 교섭이 결렬되어 8. 21.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교섭 계속 중
- 8. 22. 전면파업 돌입한 가운데 9. 1. 오후 2시 총궐기대회 예정